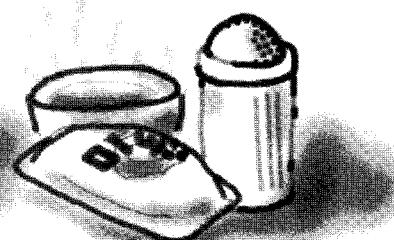


발명은 글로벌 시대를 여는 도전 정신입니다

역사속의 발명

이케다의 조미료



“여보, 이 국물이 도대체 무슨 국물인데 이렇게 맛이 있소?”

“아, 네. 이거요? 이건 다시마 국물인데요. 맛이 괜찮죠?”

1908년 어느날 저녁, 저녁 식사를 하던 일본의 이케다 박사는 아내가 만들어준 다시마 국물을 한모금 마시며 번개처럼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다, 인류가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런 기막힌 맛이 다시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 다시마 맛의 비밀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즉시 아내와 함께 다시마를 물에 삶아 다시마 국물을 한술 가득히 만들었다. 그리고 그 국물을 계속 끓여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켰더니 몇 시간 후 수분이 완전히 증발하며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았는데, 그것은 다시마 표면에 붙어 있던 흰 가루와 소금기였다.

이케다 박사는 그 솔에 다시 열을 가하면서 여러 가지의 요소로 분류하기를 수 차례나 거듭한 결과 맨 마지막으로 쌀 모양의 결정체가 남았다. 이 결정체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니 그것은 바로 ‘글루탐산 나트륨’이었다. 다시마 국물의 기막힌 맛의 비밀이 바로 이 글루탐산 나트륨이었던 것이다. 박사인 그에게 글루탐산 나트륨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밀가루를 만드는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염산으로 분해하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음식 맛의 혁명을 일으킨 ‘아지노모도’라는 조미료가 일본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조미료는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어 이케다 박사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도 슈퍼마켓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미원’, ‘다시다’, ‘감치미’ 같은 종류의 것이 바로 일본에서 93년 전에 발명되었던 글루탐산 나트륨으로 만든 조미료이다.

함께 풀어봅시다!

켜져있는 전구의 수는?

모두 10,000개의 전구가 일렬로 늘어서 있고 전구들은 모두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10,000명의 사람들이 차례로 지나간다고 합시다.

첫 번째 사람은 꺼져있는 10,000개의 전구를 차례로 켜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10,000개의 전구 모두 켜진 상태겠죠?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배수에 해당하는 전구, 즉 2, 4, 6, 8… 번째 전구를 끄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 역시 자기의 배수에 해당하는 전구인 3, 6, 9, 12… 번째 전구를, 그 전구가 꺼져있으면 끄고 꺼져있으면 켜놓고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10,000번째 사람은 10,000번째 전구에 대해서만 그 전구가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있으면 켜놓고 지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10,000명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난 후 켜져있는 전구의 수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풀이를 기다립니다. 20일까지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보내주세요(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2-2203-9460 / 보내실 곳: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61-4 한흥빌딩 302호 「발명하는 사람들」 앞 (우편번호 138-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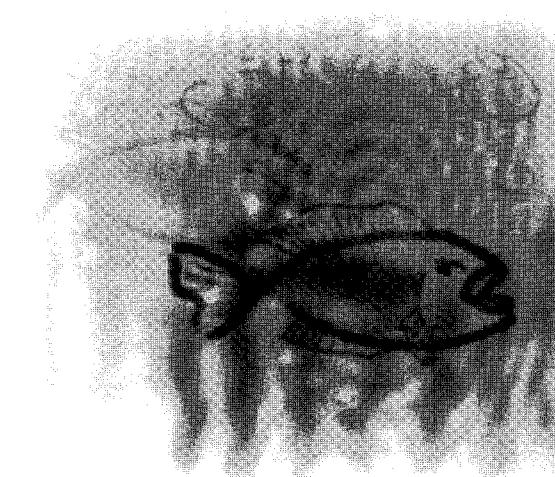
해답은 다음 호에

릴레이아이디어

정수장치

이 발명은 수족관, 양식장, 수영장 등의 물을 강제로 순환시켜 어분, 부유물과 같은 이물질을 걸러서 여과시키고 수중세균과 미생물은 효과적으로 살균·정화된 물에 공기를 불어넣어 수중산소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한결 깨끗하고 맑은 수질을 저렴한 유지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정수장치에 관한 것이다.

통상의 정수장치는 세라믹, 탄화수소, 부직포, 이온교환수지 등을 장입하여 특수 제작한 것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모품인 이들 정화제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데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수명이 다한 소모품을 폐기할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다가 살균작용이 미흡했기 때문에 위생상 좋지 않다.



특징

수족관의 응용제품, 양식장, 수영장, 풀장 등 물 교체의 불편과 노력을 해소시키고 관리상의 높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광합성을 차단하고 비용절감과 위생을 고려한 아이템이다.

아이디어 제공자: 노승학
출원번호: 특출 1999020786
등록번호: 특허 312244호

특허 Q&A

Q 상표권 침해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상표권의 침해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특허청 심판원의 권리법위 확인심판의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침해의 유형

1. 동일범위 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와 이유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유사범위 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와 이유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3. 간접침해(상표법 제66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나. 상표권 침해 예방조치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미등록상표더라도 주지·저명성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상표권 침해시 구제수단

상표등록 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제도」에 의해서,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 전에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 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상표법 제24조의 2 참조).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은 이러한 상표권 침해와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특허청 조사과 ☎ 042-481-5189)

•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제도안내」 「산업재산권보호」 「권리침해 및 보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